투자전략

12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예산안 통과와 세법 개정

분석의 기본 가정
-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은 단기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
- 실제로 꾸준히 일정 규모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형지주, 금융지주에 관심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7월 정부안 공개를 시작으로 12월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는 세법 개정

2일 자정 전 2026년도 예산안이 본의회 표결을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세법개정안이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인정되어 함께 통과된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증시 입장에서는 1)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국민성장 펀드 예산(1조원) 유지 정도가 관련 있어 보인다.

투자전략: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지해줄 대형지주, 금융지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다소 상향되고 개별 상장주식에 한정된 것이 아쉬울 수 있으나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도 세법 개정 정부안에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부활, 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고배당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마다 대표적으로 지주(산업지주, 금융지주)와 금융(은행, 보험, 증권)이 수혜 업종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 업종 선택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 지급 및 상향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간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재원과 자회사 실적이 뒷받쳐준 대형지주가 KOSPI를 아웃퍼폼했으나 하반기 동안은 증시 강세의 수혜와 배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금융지주가 타 업종대비 강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도표 1. 상반기에는 대부분 KOSPI를 아웃퍼폼했으나 하반기에는 대형지주, 금융지주, 증권이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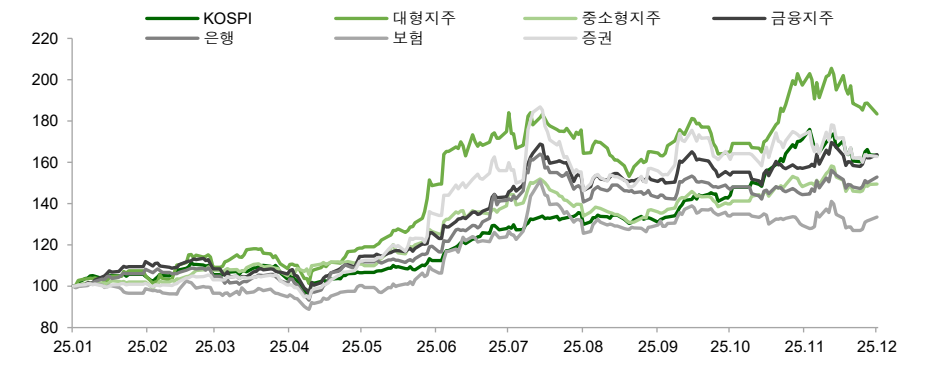

주1) 대형지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중소형 지주: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10조원 미만을 의미
주2) 2025.12.02 기준
자료: Quantiwis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2월이면 찾아오는 예산안 통과 진통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시한은 매년 12월 2일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이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국회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작년까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물론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가 법정시한 30일 이후(=내년도 새해 첫 날)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표 2. 예산안 본회의 처리일

예산안 연도	본회의 처리일	지연 일수	예산안 연도	본회의 처리일	지연 일수
2013	2013.01.01	+30일	2020	2019.12.10	+8일
2014	2014.01.01	+30일	2021	2020.12.02	법정시한 당일
2015	2014.12.02	법정시한 당일	2022	2021.12.03	+1일
2016	2015.12.03	+1일	2023	2022.12.24	+22일
2017	2016.12.03	+1일	2024	2023.12.21	+19일
2018	2017.12.06	+4일	2025	2024.12.10	+8일
2019	2018.12.08	+6일	2026	2025.12.02	법정시한 당일

자료: 국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매 해 이루어지는 예산안 통과이지만 올해에는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식시장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기존의 정부안보다 최대세율이 낮아졌으나(35%→30%) 적용 대상의 요건이 변화했다. 이외에도 여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법인세, 교육세는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어 통과된 상황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고(법인세율 최대세율 24%→25%)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1.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도 본안 규모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대한 관련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거래세율 인상과 감액배당 과세는 각각 증권거래세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에 해당해 본회의 통과 사안이 아니다. 이에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0%→0.05%,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0.20%로 인상된다. 감액 배당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안

실제로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적용

이번에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을 수취하는 시점'이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올해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전의 기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재무제표상 배당성향의 판단 기준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소득 금액의 판단 기준은 2026년이다. 또한, 2028년까지 3년 한시 적용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보고자 하는 기업들은 시한 내에 배당을 상향해야 한다.

1)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2)분리과세 최대세율 하향(35%→30%), 3)노력형 조건 변화

정부안과 대비해 변화한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번째로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다. 두번째로는 5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이 30%로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세율이 하향(35%→30%)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고배당 기업의 두번째 조건(일명 '노력형') 이 기존의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성향 25% 이상 및 배당액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로 수정되었다.

다만, ETF, 공모·사모펀드, 리츠는 제외

다만, ETF, 공모·사모펀드, 리츠는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어 해당 상품들은 배당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익률 상승을 기대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회사의 배당을 대부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 리츠의 경우는 펀드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츠의 경우 이미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 기준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가 직접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세율을 고려해 기존의 종합소득세율이 낮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도표 3.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기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분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과세방식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율	15.4%	6.6~49.5%	14%	20%	25%	30%
적용 요건			2026.01.01 이후 지급한 배당분 대상,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1)배당성향 40%이상 또는 2)배당성향 25% 이상+배당액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ETF,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츠 등 제외(=개별 상장주식 한)			

자료: 국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세법개정안? 세제개편안? 개정 범위에 따라 다른 이름

파급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명칭 변화일 뿐 본질은 같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법개정안과 세제개편안은 동일하게 매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의 정부안을 의미한다. 참고로 2010년까지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어왔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법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2022년 7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정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올해는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세법개정이 일부 세목 개정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다시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정부→국회 상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순서로 진행

세법 개정도 넓은 의미에서의 법안 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국회 상임위원회(세법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순의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보통 기재부가 9월 중으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단,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였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세 개정안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처리되는 것이다.

도표 4. 연도별 세법개정안 명칭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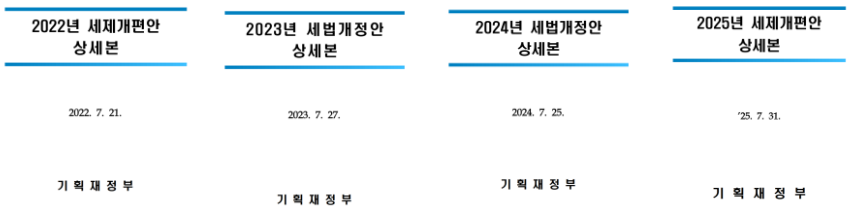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연도별 세법 개정 추진 일정(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사례 한정)

담당 기관	일정	2024년	2025년
정부(기획재정부)	세제개정안 발표	7.25	7.31
	입법예고 (14일간)	7.26~8.9	8.1~8.14
	국무회의 의결	8.27	8.26
	정기국회 제출	9.2	9.3
국회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상정	11.13	11.12
	조세소위원회 의결	-	11.30
	전체회의 의결	-	11.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국회 본회의	법안 심의 후 의결	12.10	12.02
정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12.24	
	공포	12.31	

주1) 국회의장에 의해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경우 심사기간(11.30)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다음날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주2) 주1)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투자전략: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지해줄 대형지주, 금융지주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 기조는 여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다소 상향되고 개별 상장주식에 한정된 것이 아쉬울 수 있으나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도 세법개정 정부안에서는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부활, 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같은 내용이 다뤄질 수 있어 고배당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투자 시 실제 배당 지급 및 상향 가능 여부에 대한 고려 필요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마다 대표적으로 지주(산업지주, 금융지주)와 금융(은행, 보험, 증권)이 수혜 업종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 업종 선택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 지급 및 상향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간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재원과 자회사 실적이 뒷받쳐준 대형지주가 KOSPI를 아웃퍼폼했으나 하반기 동안은 증시 강세의 수혜와 배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금융지주가 타 업종대비 강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고려해 대형지주와 금융지주 업종 내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양호하고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증가 혹은 유지된 기업을 스크리닝한 결과는 〈도표 6〉과 같다.

도표 6. 적극 주주환원 기업 포트폴리오

분류	기업 코드	기업명	수익률					배당성향(%)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성향(%)	전년도 대비 배당액 변화율(%)
			1W	1M	3M	6M	YTD			
KOSPI			3.9	0.2	36.1	51.2	97.3	27.1	30.3	10.6
대형지주	A028260	삼성물산	-5.5	17.4	23.9	29.3	43.3	19.1	18.8	2.0
	A078930	GS	-3.0	-16.8	-1.2	9.2	84.4	45.1	24.8	8.0
	A006260	LS	0.8	0.1	2.6	-11.9	23.4	19.0	11.5	2.8
	A000210	DL	5.0	8.3	17.9	21.1	52.4	25.4	13.7	0.0
금융지주	A105560	KB금융	5.5	10.4	16.1	29.9	66.2	23.6	25.6	2.9
	A086790	하나금융지주	6.4	8.1	12.0	42.5	78.6	27.2	27.7	3.7
	A316140	우리금융지주	3.3	10.8	4.9	38.3	48.0	28.9	28.3	19.2
	A138930	BNK금융지주	2.0	-12.6	24.0	47.5	123.4	28.5	26.7	26.2
	A071050	한국금융지주	5.0	8.0	2.5	28.5	49.0	22.4	21.8	50.1
	A175330	JB금융지주	3.9	0.2	36.1	51.2	97.3	28.0	27.7	15.6

주1) 대형지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의미
주2) 2025.12.02 기준, 배당성향 및 배당액은 2024년말 기준
자료: Quantiwis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KOSPI를 아웃퍼폼한 대형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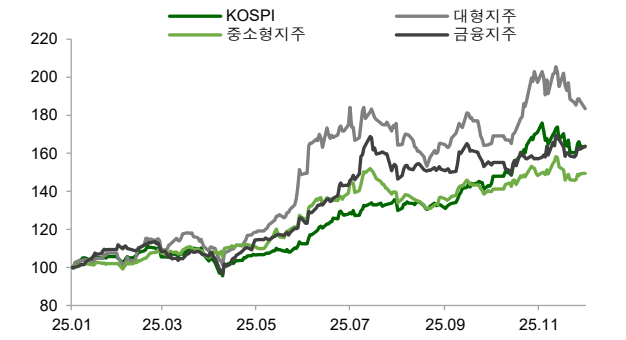

주1) 대형지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중소형 지주: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10조원 미만을 의미
주2) 2025.12.02 기준
자료: Quantiwis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하반기 이후 주춤한 금융(은행, 보험, 증권)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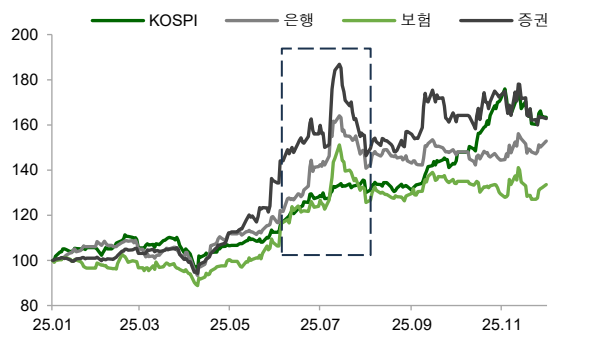

주)2025.12.02 기준
자료 : Qunatiwis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